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10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

1. 제안이유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 범위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오기 정정(안 제2조, 안 제16조)

나. 적용 범위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 세대 제한(15세대) 기준 삭제, 건물 노후 기준시점 명시(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다. 지원범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안 제5조)

- 필요한 경비에서 50% 이하 지원 ⇨ 60% 이하 지원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를 기존 “15세대 이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 규모(보조금 지원 비율)를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공동주택법 제85조¹⁾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권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